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37
----------	-------

발의연월일 : 2025. 12. 5.

발 의 자 : 전현희 · 이재강 · 안태준
홍기원 · 이병진 · 김남희
김현정 · 김준혁 · 문정복
이인영 · 문진석 · 송재봉
김 현 · 부승찬 · 김영환
문대림 · 이재관 · 이광희
윤후덕 · 손명수 · 이학영
김문수 · 박 정 · 임오경
민병덕 · 조계원 · 주철현
김기표 · 최혁진 · 최민희
박지혜 · 송욱주 · 복기왕
황명선 · 조정식 · 이해식
이정현 · 서영석 · 차지호
한창민 의원(4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에 있는 경우 안장대 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고 이상의 형”에는 국가유공자 예우 박탈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범죄도 포함되는 문제가 존재함. 이 때문에 생전에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받던 국가유공자가 사망 후에는 경미한 범죄경력만으로도 국립묘지 안장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전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던 자의 경우 별도의 심의 없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지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3호).

법률 제 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에 있는 등”을 “그 밖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안장 신청 등) ① (생략)	제11조(안장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후(死後)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생전(生前)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등</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제5조제5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	3. <u>그 밖에</u> ----- ----- ----- ----- -----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